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

제정 2019. 5.22 시행 2019. 5.24 개정 2020. 1.15 시행 2020. 1.15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에 따른 사전심사제는 계약직원 및 파견·용역 근로자, 아르바이트(단기 임시직) 근로자(이하 "비정규직"이라 한다) 의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(이하 "사전심사제"라 한다) 운영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계약직원"이란 공사 직제규정 제1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 - 2. "파견근로자"란 공사 파견근로자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
- 3. "용역근로자"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사에서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
- 4. "아르바이트(단기 임시직) 근로자"란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

시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
- 5. "채용부서"라 함은 해당 비정규직의 채용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말하다.
- 6. "심사부서"라 함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.
- 7. "정기심사"라 함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.
- 8. "수시심사"라 함은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.
- 제4조(정기심사) ① 채용부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채용인원, 채용기간, 고용형태, 채용사유, 소요예산, 직종 및 담당업무, 채용절차(계약직원 또는 아르바이트(단기 임시직)근로자 채용의 경우에 한함)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1.15.>
 - ② 채용부서는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
 - ③ 심사부서는 제출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, 인사담당국장은 최종 심사 결 과를 채용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예산담당부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,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채용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⑤ 채용부서는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, 아르바이트(단기 임시직)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그 결과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심사부 서는 공사 비정규직 인력 현황을 통합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부서와 심사부서 간의 협의로 심사절차에 갈음한다.
 - 1. 일회성 단기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
 - 2.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
-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최초심사 후 파견·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진행중인 경우
 - 2. 심사 이후 채용 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
- 제5조(사전 심사위원회) ①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 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이때 위원회에는 인사·예산·정원 등을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참여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인사·채용담당 직원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채용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제시, 설명 등을 할 수 있다.

- ⑥ 심사부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제6조(심사방식) ①심사는 채용사유의 적정성,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, 예산의 적정성, 채용절차의 공정성(계약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(단기 임시직)근로자 채용의 경우에 한함) 순으로 진행한다. <개정 2020.1.15.>
 - ②채용사유의 적정성 심사는 별표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.
 - ③예산의 적정성 심사시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④채용절차의 공정성 심사시 별표 2 비정규직 채용절차 공정성 심사 기준에 따른다. <신설 2020.1.15.>
- 제7조(수시심사) ①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비정규 직 채용사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시심사를 진행한다.
 - ②갑작스러운 업무공백 등으로 심사절차를 따르기 곤란한 급박한 비정규직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부서와 심사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갈음한다.
 - ③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수시심사에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.15.>

이 지침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

구분		내용				
정규직 채용이 기본원칙		▲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,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·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				
비정 규직 채용 이 가능한 사유	일시 간헐	▲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,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·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				
	인적 속성	▲ 60세 이상 고령자(청소·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) ▲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				
	업 특	1. 기간제 ▲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▲ 실업·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▲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▲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·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▲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,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. 파견·용역 ▲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, 시설·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▲ 법령·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▲ 산업 수요·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▲ 다른 공공기관(자회사 포함)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▲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,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				

※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'17.7.20) 참고

(별표 2) <신설 2020.1.15.>

비정규직 채용절차 공정성 심사기준

심사항목	내용					
공개경쟁채용 여부	▲ 공개경쟁채용 원칙 ▲ 공개경쟁채용이 곤란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필요 (예시)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등					
시험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 운영여부	▲ 공사 시험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시험위원 제척·기피· 회피제도 운영 여부					
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여부	▲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, 향후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채용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 징구 여부					
기타	▲ 채용전형 등 기타 전반적인 채용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					

비정규직 채용계획서

채용부서							
사업내용	○(사업명)○(사업 세부내용)○(신규/지속사업 여부)						
채용 인원(명)		채용 기간		고 용 형태			
채용사유							
직종 및 담당업무							
소요예산							
<u>채용절차</u>	○(공개경쟁채용 여부) ○(시험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 운영 여부) ○(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여부) ○(채용전형 등 기타사항) ※ 계약직원 또는 아르바이트(단기 임시직) 근로자 채용을 계획 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						
기타사항							